##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934 제출연월일: 2024. 8. 19.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하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 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의2).

#### 법률 제 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 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제12

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 관-----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 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국립 박물관・국립 미 <신 설> 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 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국립 박물관 • 국립 미 술관 설립 · 운영계획을 수립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 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 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